성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3. 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제2단계 기능전환의 시책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제4항이 삭제되어 성주군건축조례와 부합되지 않아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함

2. 주요개정 내용

○ 성주군건축조례 제43조(권한의 위임) - 삭제

3. 개정조례(안) : 별첨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5. 참고자료

○ 존치·이관사무 기능배분 심의결과 및 자치법규 정비계획 시달
(주민 01600-10064, 2003. 4. 3)

○ 입법예고(2003. 7.24 ~ 2003. 8.12)결과 : 의견없음

성주군조례 제 호

성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

성주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43조를 삭제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3조(권한의 위임) 법 제71조제3항 및 영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읍·면장에게 위임한다. 1.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접수 및 수리 2.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접수 및 수리 3.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4.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,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5.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및 수리	〈삭제〉